

심사보고서

【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】

의안 번호	266
----------	-----

2016. 3. 11.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6. 3. 3. / 박유희 의원 등 15명
- 나. 회부일자 : 2016. 3. 3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. 3. 1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지역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며,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정하여 참여를 권장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역건설산업체의 정의에서 설계업에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, 감리를 포함하고, 건설산업에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등록협회를 포함하도록 개정함 (안 제2조제1항 ~ 제2호)
- “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” 도입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의함. (안 제2조제3호 ~ 제7호 신설)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약사항을 명시하도록 권장하고, 제4항에 “민간건설사업 시”를 “민간건설사업 인·허가 시”로 함. (안 제3조제3항, 제4항)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함(안 제6조 신설)
-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한 홍보, 전시 등 지원과 자재, 장비 사용 활성화와 이를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도록 함. (안 제7조 신설)
- 공동수급체 등의 참여 권장을 더욱 강화하고자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정하고, 지역건설업체 간 공생 발전을 위하여 “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8조 ~ 제10조 신설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진현)

-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 건설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건설사업자의 지역 건설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미 시행하거나 조례의 개정을 준비 중인 사항으로,
- 금번 동 조례의 개정 중요사항을 보면 기존 조례의 확대적용을 위하여 일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,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한 용어정의와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으며, 또한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홍보와 사용권장 사항을 신설함은 물론 민간사업자들도 참여 유도하기 위한 인·허가시 권장하도록 하는 조례안임.
- 또한 당초 기존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계약관리 부서의 공사계약 조건사항의 이행 이외에 별다른 실제 적용사례가 미비하므로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부서를 포함한 해당부서에서 실제 적용하도록 하는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동 조례의 적용에 따른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